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538호
- 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(찬성자 14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2. 제안이유

가.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에서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권 수입액의 10%를 관람권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나, 공공 행사·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8%를 징수하고 있어 문화행사보다 체육경기의 관람권 사용료가 높은 상황임.

나. 시립체육시설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경기의 관람권 사용료율을 공공행사·문화예술행사와 동일한 8%로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의 관람권사용료 조정(안 제8조제2항제1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- 동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에서 체육경기를 개최할 경우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%를 관람권사용료로 부과하던 것을 8%로 낮추려는 것으로 시립체육시설에서의 체육경기 개최를 장려하고자 발의되었음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8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 ① (생략)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u>1. 체육경기 :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</u> <u>2. 공공행사, 문화예술행사 :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</u> <u>3. (생략)</u> ③ · ④ (생략)	제8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<삭 제></u> <u>1. 체육경기, 공공행사,</u> ----- ----- <u>2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- 현행 조례는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요율의 관람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,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는 ►체육경기의 경우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, ►공공행사,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100분의 8, ►일반행사의 경우 100분의 15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.
- 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인 체육경기 개최 시에도 공공행사 및 문화예술행사보다 많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다는 시설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그러나 관람권사용료를 8%로 하향 조정할 경우 세입감소가 예상되며, 비용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, 2021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도의 평균값을 산출했을 때 연 3억 7천9백만원의 세입감소가 추정됨.

< 관람권사용료 감면 시 세입감소 규모 >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평균
요율 10%(A)	1,432,894	1,708,637	144,830	228,733	2,540,033	1,893,855
요율 8%(B)	1,146,315	1,366,910	115,864	182,986	2,032,026	1,515,084
감소액(A-B)	△286,579	△341,727	△28,966	△45,747	△508,007	△378,771

※ 비용추계서 참고

- 다만, 관람권사용료 감면에 따라 사용자(관람권 발행자)의 수익이 증대되면 체육경기 유치에 활성화되므로 보다 많은 체육경기가 개최되어 세입 감소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서울시민의 스포츠 관람 및 여가선용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음.

- 따라서, 체육 경기의 관람권사용료 감면 정도는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사용료를 조정해 따라 세입의 부분 감소가 예상되므로 궁극적인 세입 증대를 위해 관람인원이 많은 체육경기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
의안번호
1538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	소관 상임위	
	이종환 의원 (문화체육관광위원회)	2024. 2. 2.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〈제안이유〉 ○ 공공행사·문화예술행사는 8%의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, 체육시설은 10%를 징수하고 있음.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8%로 관람료 조정				
	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의 관람권사용료 조정(안 제8조제1항제1호)				
추진경과	○ 2024. 2.2. 조례안 발의(대표발의 : 이종환) - (발의자) 김규남, 김기덕, 김원중, 문성호, 아이스루, 이종배 의원 등 14명				
부 서 검 토 의 건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체육시설 관람권 사용료를 인하를 통해 공공행사·문화예술행사 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, 체육시설 이용 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체육행사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,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 ○ 다만,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로 인해 우리시 세입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, 관람인원이 많은 경기 등에 대한 유치노력 필요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남규하(☎2133-2677)	담당	방준흠(☎2133-2678)